

[특허형사쟁점] 특허분쟁 관련 위증 책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



사안의 개요

- (1) 특허권자 호주 회사, 특허제품 - 환자 맞춤형 코골리 수면무호흡장치
- (2) 특허제품 국내총판회사 - 그 대표이사는 개량형 제품 국내영업을 호주 특허권자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특허등록 및 영업하려는 계획
- (3) BUT 호주회사와 계약기간 3년 남음, 회피방안으로 몰래 눈에 띄지 않는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함
- (4) 국내총판 회사 직원의 부인 명의로 별개 회사 설립, 실질 사주는 국내총판 대표이사, 외형상 사업자 명의로는 직원 부인, 품질관리사 자격 있는 직원 - 총판업체 퇴사하여 신설 업체 근무

(5) 특허분쟁 등 다른 사건 재판에서 직원과 부인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운영주체에 대하여 실질 사주가 있고 본인들은 형식상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설업체 실제 운영한다고 위증함

판결요지 - 모해위증 혐의 인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모해위증 법리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최종적인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상당히 침해하였다. 또한 피무고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

침해대응/감정,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대응, 십수년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